

## 행정기관명

수신자  
(경유)

### 제 목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

채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최대 30일 범위에서 귀하에 대한 감치를 귀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고자 합니다(근거: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의4)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납세자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<br>(상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생년월일<br>(법인등록번호)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<br>(사업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지방세 채납 명세(총채납세액: 원) (단위: 원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세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| 가산금              | 계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감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감치요건     | ※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 감치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| 일 (최대 30일)<br>※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채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치 집행 종료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감치 신청 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, 이에 대한 소명자료 또는 의견진술 신청서를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 . . . . .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발신명의

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 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) 팩스번호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 구분